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33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1. 5. 25.

4. 회부일자 : 2021. 5. 31.

Ⅱ. 개정이유

- 각종학교 1개교 도로명주소 정정
- 2021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병설유치원 2개원 신설

Ⅲ. 주요내용

- 1. 각종학교 명칭 및 위치(안 별표 6)
 - □ 정정: 1개교
 -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
 - 도로명주소 정정: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
 - → 금천구 남부순환로126길 25
- 2. 유치원 명칭 및 위치(안 별표 7)
 - □ 신설: 2개교
 - 서부교육지원청

-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(은평구 불광로 51)
- 강남서초교육지원청
 - 서울청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(강남구 압구정로71길 9)

Ⅳ. 참고사항

- 1. 관계법령([별첨 5])
 - 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
 - 나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관장사무)
- 2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[별첨 2])
- 3. 관련부서 협의 : 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
- 4. 기 타
 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별첨 1]
 - 나. 입법예고(2021.4.14.~5.4.) 결과 : 의견 없음
 - 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라.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[별점3]
 - 바. 학생인권영향평가: [별첨 4]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3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주소 정비와 병설유치 원 2개원 신설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주소 정비의 건

○ 먼저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의 위치 정정의 건은 조례에 잘못 반영된 도로명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는 2017년 3월에 (구)한울중학교 본관동 부지에 개교하였으나, 동 조례안의 주소지가 본관동이 아닌 신관동 위치(현 모두의 학교1))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, 동 개정 조례안은 잘못 반영된 도로명 주소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1]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위치 현황

연월일	변경사항	비고	
2016. 3. 1.	한울중학교 이전	· 독산동 → 시흥동 이전	
2017. 3. 1.	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개교 ※ 서울시교육청 산하	· (구)한울중학교 본관동에 개교	

¹⁾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구)한울중학교 부지에 2017년 9월 개관한 평생교육 시설

연월일	변경사항	비고	
	모두의학교 개교 ※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산하	· (구)한울중학교 신관동에 개교	

나. 학교 신설의 건

- 다음으로 학교신설은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서울청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병설유치원 2개원이 2021년 9월 1일 개교할 예정에 있는바,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이들 병설유치원 2개원은 기존 초등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인바,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충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학교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더욱이 2021년 6월 기준으로 모두 80%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는바, 금년 9월 1일 개교에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3] 병설유치원 공정율 현황

(기준 : 2021. 6.)

학교명	자치구	규모		공정율(%)
44.9		학급수	정원(명)	
서울불광초병설유	은평구	3	62	80
서울청담초병설유	강남구	3	62	100

□ 이상으로「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 계 법 령

교육기본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54호, 2021. 3. 23., 타법개정]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 ② 법인이나 사인(私人)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약칭: 교육자치법)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54호, 2021. 3. 23., 타법개정]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- 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- 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- 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- 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- 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- 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- 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- 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- 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- 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- 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